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5일, 임호선 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호선 의원)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IT·B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로봇 활용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서빙·조리·배달로봇 등을 포함함.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푸드테크 관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연 38% 성장하는 등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미국·EU 등은 푸드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

반면, 국가차원에서의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종합적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개정안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의 중요성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푸드테크,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산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및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지원 등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진흥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처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같은 취지의 제정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안)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안·김도읍의원안)] 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감안할 때,

동 「식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3개의 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